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00881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1057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00881 판결

전문

원 고 A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김성희, 서장원

피 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원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피고 4 내지 1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L는 각 2020. 2. 12., 피고 H, M는 각 2020. 2. 13., 피고 K, O, P, Q, R는 각 2020. 2. 14., 피고 E은 2020. 2. 17., 피고 F은 2020. 3. 1., 피고 S는 2020. 3. 19., 피고 I, N는 각 2020. 3. 22., 피고 B, J는 각 2020. 4. 16., 피고 C은 2020. 4. 21., 피고 D은 2020. 7. 15.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T계 14세손 U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필요한 경우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별 각 해당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V 등 명의의 등기

(1) 천안시 동남구 W동(구 지명 천안군 X, 이하 'W동'이라고만 한다) Y 임야 25정 3단 3무보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에 '대정 5년(1916년) 5월 3일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하여 Z이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Y 임야 24정 7무보에 관하여 1925. 3. 25.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V, AA, AB, AC, AD(이하 이 사건 등기명의자)1) 은 1926. 9. 6. Y 임야 24정 7무보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2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은 1926. 9. 6. 별지 목록 제17, 21, 2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각 192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

다. Y 임야의 분할

(1) Y 임야에서 1958. 12. 10.경 다음 표 순번 1~9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면서 Y 임야가 AF 임야 23정 3단보로 변경되었고, 1969. 5. 20.경 위 AF 임야에서 다음 표 순번 10~13 기재 각 토지가

다시 분할되었으며, 이후 등록전환 및 면적 환산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들은 다음 표 ‘등록전환 후 토지’란 각 기재 토지가 되었다(2차례 분할 후 남은 AF 임야는 면적이 226,017㎡로 환산되었다).

순번	분할된 토지	등록전환 후 토지	비고
1	AG 임야 1단보	AH 전 1,031㎡	
2	AI 임야 6무보	AJ 전 545㎡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3	AK 임야 6무보	AL 전 635㎡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토지
4	AM 임야 1단 3무보	AN 답 1,27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5	AO 임야 4무보	AP 답 347㎡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6	AQ 임야 5무보	AR 전 516㎡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7	AS 임야 4무보	AT 답 407㎡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
8	AU 임야 2단 2무보	AV 전 2,221㎡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토지
9	AW 임야 7무보	AX 전 674㎡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
10	AY 임야 1단보	AZ 전 1,012㎡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토지
11	BA 임야 1단 3무보	BB 전 1319㎡	
12	BC 임야 1단 6무보	BD 전 459평	
13	BE 임야 1단 2무보	BF 전 1,111㎡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

(2) 1979. 12. 31.경 위 표 순번 12 기재 토지에서 BG 전 36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분할 후 남은 BD 전 423평은 1,398㎡로 면적이 환산되었으며, 위 BG 전 36평은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1999년경 천안시의 도로 개설로 ① AF 임야 226,017㎡에서 다음 표 기재 각 토지가 분할, 등록전환되었고, ② AH 전 1,031㎡에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가, BB 전 1,031㎡에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가, BD 전 1,398㎡에서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분할 후 남은 각 토지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각 토지이다).

순번	분할된 토지	등록전환 후 토지	비고
1	BH 임야 2,000㎡	BI 임야 2000㎡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2	BJ 임야 3㎡	BK 임야 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3	BL 임야 77㎡	BM 임야 77㎡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라. 상속 등

(1) 이 사건 등기명의자 중 AC은 1937. 11. 17. 사망하였고, 그 후 BN이 1940. 8. 26.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1940. 9. 19. 호주상속하였다. BN은 1967. 10. 29. 사망하여 처인 BO과 자녀 피고 B, C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BO이 1968. 2. 10. 사망하여 피고 B, C이 B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C의 5분의 1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10 (= 1/5 \times 1/2)$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등기명의자 중 AB은 1954. 7. 18. 사망하여 그 자녀 중 장남인 BP가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BP가 1972. 10. 1. 사망하여(BP의 처는 1969. 1. 6. 사망), 그 자녀들인 아들 BQ, BR(호주상속), BS, BT, 딸 D(1961년 혼인), BU(1956년 혼인)이 AB의 재산을 상속받아 ① 호주상속인 BR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6/100$ 지분[$= 1/5 \times 6/20 (= 6 + 4 + 1 + 1 + 4 + 4)$], ② 호주상속인이 아닌 아들 BQ, BS, BT은 각 $4/100$ 지분[$= 1/5 \times 4/20$], ③ 딸들인 D, BU은 각 $1/100$ 지분[$= 1/5 \times 1/20$]을 각 상속하였다.

(가) BR은 2008. 2. 22. 사망하여 BR의 처 피고 I과 자녀들 피고 J, K, L, M, N가 B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I은 $18/1,300$ 지분[$= 6/100 \times 3/13 (= 3 + 2 + 2 + 2 + 2 + 2)$], 피고 J, K, L, M, N는 각 $12/1,300$ 지분[$= 6/100 \times 2/13$]을 각 상속하였다.

(나) BS은 2015. 6. 21. 사망하여 BS의 자녀들인 피고 P, Q, R, S가 B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BS의 처 BV은 사망),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100$ 지분[$= 4/100 \times 1/4$]씩을 각 상속하였다.

(다) BT은 2013. 9. 2. 사망하여 BT의 처 BW와 자녀 피고 O가 B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BW가 2017. 10. 7. 사망하여 피고 O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T 지분 $4/100$ 을 단독상속하였다.

(래) BU은 1988. 10. 30. 사망하여 남편 BX과 자녀들 피고 E, F, G, H이 BU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가, BX이 2011. 12. 1. 사망하여 피고 E, F, G, H이 BX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E, F, G, H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400 (= 1/100 \times 1/4)$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7. 6. 이 법원 2018가단6361호로 이 사건 등기명의자 가운데 V의 상속인 BY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Y가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이 법원은 2019. 9.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관련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9. 18. 이 법원 2018가합1004호로 이 사건 등기명의자 가운데 AA, AB의 상속인 BZ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Z가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이 법원은 2020. 1. 16. 제1관련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Z가 대전고등법원 2020나110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판결은 2020.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9. 22. 이 법원 2018가단111775호로 이 사건 등기명의자 가운데 V의 상속인 CA, C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A, CB가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이 법원은 2020. 6. 10. 제1관련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 내지 (3)항 판결을 합하여 ‘관련 판결’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5496호로 이 사건 등기명의자 가운데 AD의 상속인들인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C, CE, CG, CH, CI, CJ, CK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낙을 하였고, CD, CF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9. 9. 26.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명의신탁의 해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를 종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1,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46, 47, 48, 49, 54, 80, 81, 82, 8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 사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등기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자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을 제외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 사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관련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U 생존 당시에는 임야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거나, 원고가 타 종중원인 A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는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위 피고들의 주장 대부분은 관련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CL씨의 종원 등 원고 종중원이 아닌 자들의 분묘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을가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CL씨의 종원 등의 분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된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

별지1

1. 천안시 일야 223,937㎡
2. 천안시 동남구 전 941㎡
3. 천안시 동남구 전 991㎡
4. 천안시 동남구 전 1,261㎡
5. 천안시 동남구 대 119㎡
6. 천안시 동남구 일야 2,000㎡
7. 천안시 동남구 일야 3㎡
8. 천안시 동남구 일야 77㎡
9. 천안시 동남구 전 90㎡
10. 천안시 동남구 전 328㎡
11. 천안시 동남구 전 137㎡
12. 천안시 동남구 전 1,111㎡
13. 천안시 동남구 전 545㎡
14. 천안시 동남구 답 347㎡
15. 천안시 동남구 답 1,279㎡
16. 천안시 동남구 전 635㎡
17. 천안시 동남구 전 516㎡
18. 천안시 동남구 전 516㎡
19. 천안시 동남구 답 407㎡
20. 천안시 동남구 전 2,221㎡
21. 천안시 동남구 전 344㎡
22. 천안시 동남구 전 2,502㎡
23. 천안시 동남구 전 674㎡
24. 천안시 동남구 전 1,012㎡. 끝.

별지2

1. 피고		의 지분 1/10
2. 피고		의 지분 1/10
3. 피고		의 지분 1/100
4. 피고		의 지분 1/400
5. 피고		의 지분 1/400
6. 피고		의 지분 1/400
7. 피고		의 지분 1/400
8. 피고		의 지분 18/1300
9. 피고		의 지분 12/1300
10. 피고		의 지분 12/1300
11. 피고		의 지분 12/1300
12. 피고		의 지분 12/1300
13. 피고		의 지분 12/1300
14. 피고		의 지분 4/100
15. 피고		의 지분 1/100
16. 피고		의 지분 1/100
17. 피고		의 지분 1/100
18. 피고		의 지분 1/100. 끝.

1) AC은 위 U의 손자이나 타가에 출계한 AE의 후손이고, V, AA, AB, AD은 모두 원고 종중원으로, 위 5인은 모두 사망하였으나, 따로 망인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별지 목록 제17, 21항 기재 각 토지의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일이 1940. 9. 6.로,

등기원인이 1940. 9. 3. 매매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AA은 1930. 9. 30. 사망하였으므로, 위 일자는 연도 오기로 보인다.